

-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
-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재 법인과 재계약 하고자,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예산군자원봉사센터
- 시설현황 개요

시설명 (설립)	소재지	규모	주요업무	직원 수	현재 수탁처
예산군 자원봉사 센터 (2002.11)	예산읍 산성공원 2길15	330m ² 회의실, 교육실 제과제빵실, 사무실	예산군자원봉사 진흥사업 등	7명 (*센터장, 사무국장, 팀장, 코디네이터 4)	(사)예산 군 새 마 을회

* 센터장 : 2년 임기(1회 연임 가능) 무보수 / 수탁기관 공개채용(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)

※ 최초위탁 : 2002.11~2006.10.(4년)/ 공모 재위탁 : 2022 ~ 2023(2년)

- 위탁사무 :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
 -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진흥 사업 전반
- 추진근거
 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 - 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 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」
- 민간위탁 필요성
 -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분야 다년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, 지역수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현재 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
-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 결과 : 적정
-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: 우수[자체평가 및 대외평가(행정안전부)]
 - ※자원봉사 주요 프로그램(11,200여명 참여/500백만원/2년간)
 - ※자원봉사 연계 연간 40,000여명 참여
- 민간위탁 예산 : 년 556,283천원(국비6%, 도비12%, 군비82%)
- 위탁기간 : 2024. 1. 1 ~ 2025. 12. 31(2년)
-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성과평가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 - 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 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- 민간위탁성과평가결과

4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, 민간위탁을 현재 수탁법인과 재계약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 및 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
-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현재 수탁 법인은 자원봉사활동지원의 다년간 경험과 체계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갖추어, 대외 평가 행정안전부 우수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,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 됨.
-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성과평가 결과 부족한점의 보완과,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자 외부위원 구성 등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·평가, 협업 등을 강화하여 위탁사무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임.